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
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.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
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.

-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지속적 상승,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,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.

-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~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 또는 의원 면직 등으로 근무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'교육지도시간(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근무)'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.

-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동일한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